

의 안 발 의 서

의 번	안 호	2009 -
--------	--------	--------

수 신 : 거창군의회 의장

2009. 6. .

제 목 : 조례안 제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합니다.

붙 임 :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 거창군의회 강 창 남 의원 (인)

거창군의회 강 평 자 의원 (인)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09. 06. . (제 회)

의결사항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강 창 남 의원 외 1
발의연월일	2009. 06. .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09년 월 일
발의자 강창남의원 외 1인

1. 제안이유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 모집 등 군수가 수행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 라.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노인일자리사업의 위·수탁에 대한 협약, 의무,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제9조).
- 바. 공익형 및 교육형, 복지형, 인력과건형 등 지원대상사업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사.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의 모집과 선발, 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재해·사망 등에 대비한 참여자의 보험가입 규정을 명시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 주민생활지원과 합의

라. 기타 : 해당없음

거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제23의2 및 노인일자리사업 안내(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발행)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사업”이란 공공분야의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과 민간분야의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등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군수가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한 지원범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직접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업무) 군수는 노인들을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
2.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창업모델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3. 노인일자리사업 정보 수집 및 제공
4.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소득사업 발굴 지원
5. 그 밖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제6조(사업추진) ①노인일자리사업은 군수가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거창군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7조(위탁·수탁 협약) ①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협약사항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에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지원대상 사업의 구분) ①공익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환경, 질서 유지, 시설관리 등)중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②교육형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하는 사업

③복지형은 사회적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하여 거동불편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④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파견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

⑤시장형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창출되는 사업

⑥창업모델형은 노인에게 적합하고 소득창출효과가 큰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노인 창업의 사회적 확산 및 파급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제11조(참여자 모집·선발) ①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 등은 지침에서 정한 참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발한다.

1. 65세 이상의 참여 희망자 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

2. 지침에서 정한 선발 기준표에 의한 우선순위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참여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참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참여 신청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한 자

2. 일자리사업 참여로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13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정기 또는 필요시 소속직원이 노인복지 관계 법령에 의거 지도·감독하게 하고, 사업운영 상황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령 및 지침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